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853
----------	-----

제출년월일 : 2004. 4. 16.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221번지)외 1,517인으로 부터 제정청구된 조례로서
- 친환경 농산물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사항 (안 제2조)
- 자치단체의 임무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안 제4조 내지 안6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안 제7조)
- 지정판매업자의 신청·의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재정부담 : 별도의 재정적부담 (급식경비일부 부담)
- 조례제정청구단체 제출조례(안)수용

4. 입법예고

- 기간 : 2004. 3.16~ 2004. 4. 05 ▶결과 : 의견제출 없음

5. 본문 : 덧붙임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성군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생활 개선과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2.“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 3.“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4.“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 5.“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 ①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국내와 지역생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 내에 있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성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군수는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군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식재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고성교육청 관계관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2인
4. 고성군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단체 2인
6. 교사단체 2인
7. 농어업인단체 2인
8.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9. 관련 전문가 1인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③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정판매업자의 신청) 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3. 주요 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정판매업자의 의무) ①지정판매업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농산물 공급내역을 매월 말 기준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군수는 지정판매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해태 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 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 내역을 군수와 고성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고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지정판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

-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상임대표 안태완(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221번지) 외 1,517인으로 부터 제정청구된 조례로서
-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학교급식에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3. 12. 30일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으로 시장·군수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 본 조례안중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4호, 제9조 제1항,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을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만을 사용”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WTO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벗어난 규정으로 타 회원국들로부터 제소 당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규정에 따라 WTO(세계무역기구) 협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로 사료됨으로 심의에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 협정 관련 사항】

-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3조와 제24조 및 『정부조달에관한협정』 제3조를 위반
-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
⇒수입품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3조와 국내농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감축하도록 하는 『농업에관한협정』 제6조의 규정위반

2004. 4.

고 성 군 수